북항 월드메르디앙 그랑블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7.16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1-468-2502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거주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7.16.(수)	2025.07.28.(월)	2025.07.29.(화)	2025.07.30.(수)	2025.08.05.(화)	2025.08.08.(금)~ 2025.08.10.(일)	2025.08.16.(토)~ 2025.08.18.(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북항월드메르디앙.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O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여,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 공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위장 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20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2025.06.3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16.(수)**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7.28.(월)	2025.07.29.(화)	2025.07.30.(수)	2025.08.05.(화)	2025.08.08.(금)~ 2025.08.10.(일)	2025.08.16.(토)~ 2025.08.18.(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홍보관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홍보관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48-2)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홍보관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동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본 아파트는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책인「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024.09.12. 개정된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39세대 중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10세대(건설량의 15% 범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15세대(건설량의 23%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선별하고, 공급 금액(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금액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하여 공급합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은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중 정당 당첨자(정당계약일)에 한하여 공급하며, 이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선착순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의 분양가 인하 혜택은 해당 세대의 정당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한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시(최초 계약자의 공동명의 변경은 제외)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 **「아이·맘부산플랜」 적용 세대**

구분	70A	70B	70C	96A	142A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	4	2	-	-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5	5	5	-	-	15
합계	9	9	7	-	-	25

-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아이·맘부산플랜」대상 세대에서 제외되며,「아이·맘부산플랜」적용세대는 25세대입니다.
- 위 표와 같이 각 유형별 · 타입별「아이·맘부산플랜」적용 세대 배정이 되고 **배정된 세대수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으며**,「아이·맘부산플랜」**배정 세대수보다 당첨자 수가 많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별** 합니다.
- **추첨의 경우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각 유형별 · 타입별 배정 세대수보다 초과하여 당첨자 수가 많은 경우로서 타 유형의 특별공급 접수 미달에 따라 무작위로 당첨된 당첨자수에 따라 추첨 진행**
  ① 추첨일 : 당첨자 발표일 이후 추첨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 일정 개별 통보** [추첨일정은 유선 및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추첨 대상자의 착신 불가(수신인의 통화거절, 연락처 변경 등) 및 참석 불가 사유(해외여행, 입원 등 일신상의 불참 사유 포함)등으로 인하여 미참석 시 대상자 선정이 불가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비서류 : 당첨자 본인 참석 –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및 위임장(홍보관 비치), 대리인 신분증
- 「아이·맘부산플랜」에 선별되는 세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되는 동 · 호수 추첨과는 무관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과 - 호(2024. . .)**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48-1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7층 2개동 총 68세대**
[특별공급 39세대(기관추천 6세대, 다자녀가구 10세대, 신혼부부 15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031	01	070.3329A	70A	70.3329	34.7332	105.0661	12.1613	117.2274	10.3244	23	2	4	5	1	2	14	9	1
	02	070.7536B	70B	70.7536	36.2378	106.9914	12.2340	119.2254	10.3861	23	2	4	5	1	2	14	9	1
	03	070.3054C	70C	70.3054	36.8789	107.1843	12.1565	119.3408	10.3204	20	2	2	5	-	2	11	9	1
	04	096.6339A	96A	96.6339	48.4005	145.0344	16.7054	161.7398	14.1854	1	-	-	-	-	-	-	1	-
	05	142.8305A	142A	142.8305	69.9045	212.7350	24.6968	237.4318	20.9665	1	-	-	-	-	-	-	1	-
	합 계									**68**	**6**	**10**	**15**	**2**	**6**	**39**	**29**	**3**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070.3329A	070.7536B	070.3054C	096.6339A	142.8305A
약식표기	70A	70B	70C	96A	142A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제 계약면적과는 소수점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관 및 공급안내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주거전용면적 내 일부 발코니 초과 면적이 포함되어 산정되었으며, 면적 산출근거 등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공용면적은 상품성 개선 및 현장 여건 반영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북항 월드메르디앙 그랑블루** 홍보관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70A	70B	70C	96A	142A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1	-	-	**2**
	장애인	-	1	1	-	-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	-	-	**1**
	중소기업 근로자	-	1	-	-	-	**1**
	소계	2	2	2	-	-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	4	2	-	-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5	5	5	-	-	**1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	-	-	**2**
생애최초 특별공급		2	2	2	-	-	**6**
합 계		**14**	**14**	**11**	**-**	**-**	**3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표**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소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70A	23	101동 2호	4~5층	2	145,464,000	295,336,000	440,800,000	44,080,000	396,720,000
			6~10층	5	151,767,000	308,133,000	459,900,000	45,990,000	413,910,000
			11~15층	5	155,958,000	316,642,000	472,600,000	47,260,000	425,340,000
			16~21층	6	160,116,000	325,084,000	485,200,000	48,520,000	436,680,000
			22~26층	5	164,307,000	333,593,000	497,900,000	49,790,000	448,110,000
70B	23	101동 1호	4~5층	2	148,137,000	300,763,000	448,900,000	44,890,000	404,010,000
			6~10층	5	154,539,000	313,761,000	468,300,000	46,830,000	421,470,000
			11~15층	5	158,796,000	322,404,000	481,200,000	48,120,000	433,080,000
			16~21층	6	163,053,000	331,047,000	494,100,000	49,410,000	444,690,000
			22~26층	5	167,343,000	339,757,000	507,100,000	50,710,000	456,390,000
70C	20	102동 3호	8층	1	153,747,000	312,153,000	465,900,000	46,590,000	419,310,000
			9~12층	4	155,892,000	316,508,000	472,400,000	47,240,000	425,160,000
			13~19층	7	162,294,000	329,506,000	491,800,000	49,180,000	442,620,000
			20~27층	8	166,551,000	338,149,000	504,700,000	50,470,000	454,230,000
96A	1	102동 1호	27층	1	219,021,000	444,679,000	663,700,000	66,370,000	597,330,000
142A	1	101동 1호	27층	1	331,650,000	673,350,000	1,005,000,000	100,500,000	904,500,000

■ **공통사항**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 ·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인지세의 경우 사업주체 및 분양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각 50%)납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카달로그 등)에 표기된 평형별 평면 등의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철거할 수 있습니다. (홍보관 공개기간 : 정당당첨자 계약일까지 공개 후 철거예정임. 단, 철거시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관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 계약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다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날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의 계약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공금대금을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는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며,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td></tr>
</table>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아이·맘부산플랜」 적용)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10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함
- 임신(태아), 입양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table>
<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점수</th></tr>
<tr><td>계</td><td>100</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3명</td><td>35</td></tr>
<tr><td>2명</td><td>25</td></tr>
<tr><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2명</td><td>10</td></tr>
<tr><td>1명</td><td>5</td></tr>
<tr><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td>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15</td><td>10년 이상</td><td>15</td><td>-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td></tr>
</table></td></tr>
</table>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아이·맘부산플랜」 적용)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7.1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 군복무중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r><td rowspan="8">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8">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
<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16</td><td></td><td></td></tr>
<tr><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td rowspan="4">35</td><td>0명</td><td>5</td><td>4명</td><td>25</td></tr>
<tr><td>1명</td><td>10</td><td>5명</td><td>30</td></tr>
<tr><td>2명</td><td>15</td><td>6명 이상</td><td>35</td></tr>
<tr><td>3명</td><td>20</td><td></td><td></td></tr>
<tr><td rowspan="4">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td rowspan="4">17</td><td>6개월 미만</td><td>1</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0</td></tr>
<tr><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3</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4</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13</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td><td colspan="4">
<table>
<tr><td rowspan="6"></td><td rowspan="6"></td><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5</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14</td></tr>
<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6</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15</td></tr>
<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7</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16</td></tr>
<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8</td><td>15년 이상</td><td>17</td></tr>
<tr><td>7년 이상 ~ 8년 미만</td><td>9</td><td></td><td></td></tr>
<tr><td colspan="6">※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td></tr>
</table>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td></tr>
<tr><td>비고</td><td colspan="4">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td></tr>
</table>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청약신청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예시1) 단독세대가 아닌분**(직계존속과 같은 세대구성의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청약신청자 + 직계존속 등재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 예시2) 단독세대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청약 신청자만 등재 혹은 미혼인 청약신청자 + 동거인 등재(형재 · 자매)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해 청약가능 → **본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단독세대 추첨제 청약불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7.1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7.28.(월) - 청약HOME 인터넷 : 09:00 ~ 17:30 - 사업주체 홍보관 : 10:00 ~ 14:00	인터넷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청약HOME' 앱 • 사업주체 홍보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48-2
일반공급	1순위	2025.07.29.(화)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청약HOME'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07.30.(수) 09:00 ~ 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홍보관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발표

구분	대상자	당첨자 및 동 · 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5년 08월 05일(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홍보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 받은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 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등이 적용됨)

※ 계약체결일정 및 당첨자 서류 확인 일정은 예약제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각 일정과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당첨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8.05.(화) ~ 2025.08.14(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8.05.(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서류제출 기한	**2025.08.08(금) ~ 2025.08.10(일) (10:00~17:00)**
대 상	**특별공급, 일반공급(1, 2순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처	**북항 월드메르디앙 그랑블루 홍보관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48-2**
유의사항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16(수))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이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별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는 반드시 당첨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 서류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신청 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하며, 소명하지

못 할 경우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며, 부적격처리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동 · 호수의 공금금액을 확인한 후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홍보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제출한 당첨자의 경우 계약 체결시 진행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봅니다.)

■ 유형별 당첨자 (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추첨제 포함)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 제외)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구성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서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당첨자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경우는 생략)
	O		인감증명서	본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I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O		인감도장	본인	• 인감도장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대리인 위임 불가
		O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출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세대분리에 한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본 주택의 해당순위 요건에 충족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일반공급 가점제 추가서류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 존 · 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존·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배우자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 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해당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에서도 발급 가능
		O	당첨사실 확인서		•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본인만)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① 파견 및 출장명령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①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O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와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 확인)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당사 홍보관에 비치, 임신의 경우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O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 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O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당사 홍보관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당사 홍보관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 •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자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부동산소유현황 (부동산공시가격 열람 포함)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 토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조회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 열람/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텍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

		O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추첨제 해당자) • 전체 포함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O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표 소득증빙서류] 참조
		O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홍보관 비치)
	O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 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 참조
		O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임신한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당사 홍보관에 비치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자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부동산소유현황 (부동산공시가격 열람 포함)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 토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조회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 열람/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텍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O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추첨제 해당자) • 전체 포함하여 발급(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 받은 해당자		O	무주택 소명서류	-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O	위임장	청약자	• 당사 홍보관에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1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확인 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지우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직인날인) ①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 (매입,매출 기재된 부본)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후 가입분 불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세무서 ② 세무서, 등기소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계속적인 프리랜서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해당직장
	신규 프리랜서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직인날인) ② 해당기간의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계속적인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해당직장
	신규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홍보관 비치)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 전년도 또는 금년도 모집공고일 이전 소득은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 ② 사실증명서 (신고사실 없음)	① 홍보관 비치 ② 세무서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한함)		①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1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부탁드리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 취급 및 사업자의 직인 날인이 필수입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안내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환급확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발급기준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 ② 대법원 등기소 (www.iros.go.kr)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농업확인서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주민센터 방문 전국통합발급 요청,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등기소(www.iros.go.kr) ②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은 전국단위 불가)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기간	2025.08.16.(토) ~ 2025.08.18.(월), 10:00~17:00까지
계약체결 장소	당사 홍보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48-2)
유의사항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 경쟁 미달시에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래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홍보관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재당첨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홍보관으로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필히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분 제외)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에「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O		계약금 입금증		• 홍보관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O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접수장소에 비치
	O		수입인지(인지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시 35만원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각각 50%씩) 납부하여야 함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O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서류제출기간에 제출 완료 시 제외
		O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본인 이외)	O		위임장	본인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홍보관 비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O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1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하나은행**	**918-910009-20904**	**㈜코람코자산신탁**

※ 현재 분양대상 목적물은 ㈜코람코자산신탁으로 관리신탁되어 있으나, 추후 담보신탁으로 전환되어 시행수탁자, 금융기관, 분양대금 납부계좌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을 해야하며 변경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개별 통보 할 예정이오니 계약 관련 변경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음(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분양대금을 위 지정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또는 온라인 수납하며 이외에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홍보관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이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 분양권 전매 거래시에 인지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는 전매자 상호간에 합의 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 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의 책임입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토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①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당첨자는 당사 홍보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④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야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하여 통보 해야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10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 완료된 아파트이므로 사전방문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기시공된 마감재, 가전 및 가구류 등 세대 내부품목을 포함한 모든 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월 : 2025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발코니를 확장시공하여 공급하므로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발코니 비확장형을 선택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가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코니 확장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변경 등 일체의 추가공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구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입주 후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입주자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입주 후 발코니를 임의로 개별 변경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가스입상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시공시 설치 위치 및 상부 천장의 형태/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수전류, 배관류, 배수트랩 등은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또는 상부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기본제공 품목

■ 기본제공 품목

구분		비고	70A	70B	70C
공통	1WAY 시스템에어컨	LG전자 에어컨	O (4대)	O (4대)	O (4대)
공통	홈네트워크 월패드	COMMAX	O	O	O
공통	디지털 도어록	COMMAX	O	O	O
공통	바닥재	친환경 강마루	O	O	O
현관	팬트리	팬트리장 도어 및 선반	O	O	O
거실	벽체	포슬레인타일(600*1,200)	O	O	O
거실	우물천정	적용	O	O	O
주방/식당	주방상판	LX하우시스 인조강화대리석	O	O	O
주방/식당	상판/벽 타일	인조강화대리석/도기질타일	O	O	O
주방/식당	조리대	3구 인덕션	O	O	O
주방/식당	조리대	렌지후드	O	O	O
욕실	공용욕실	포슬레인타일(600*600)	O	O	O
욕실	공용욕실	욕조	O	O	O
욕실	공용욕실/부부욕실	대림통상(양변기, 세면기, 수전)	O	O	O
욕실	부부욕실	포슬레인타일(600*600)	O	O	O
욕실	부부욕실	비데	O	O	O
욕실	부부욕실	샤워부스	O	O	O
욕실	부부욕실	욕실폰 (COMMAX)	O	O	O
침실1(안방)	드레스룸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	O	O	O
침실1(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O	O	O
침실3	붙박이장	붙박이장	O	O	O

13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공 통	일반사항 인허가	■ 본 사업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 및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 됩니다.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사무실을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동PIT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관 조명, 영구배수시스템 유지(설치시),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 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시행규칙」제13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관련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 건축물과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옥외경관조명, 조경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관리비 부과기준 등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관리업체(관리사무소, 입주관리업체 등)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하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각종 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및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마감시간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은 세대 간 벽체를 공유하는 건축물의 특성상 일부 세대에서 측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수 없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에 의한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 또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아파트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공용홀, 복도, 근린생활시설, 조경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시점에 따라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및 기반시설	■ 단지 외 남서측, 북서측면으로 왕복 2차로 도로가 위치하며, 보행자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차량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소방차 전용구역) 및 단지 내 보행로,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접, 소음, 분진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및 인접대지와 높낮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 외부의 도로 및 옹벽 등의 구조물은 실시계획단계로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초량천, 초량3구역 재개발 구역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하며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악취, 해충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단지 인근에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로, 버스정류소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간섭,소음등) 및 유해시설 등은 주택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 홍보관 및 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 및 가스 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 및 가스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또는 가스정입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학교	■ 본 지역의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계일반	■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홍보관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밥굽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저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 수분양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구역경계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부상 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또는 실측정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입주 잔금 납입시 상호 정산합니다. 다만, 분양면적 및 공유지분 면적 증감이 2%미만일 때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인접대지의 담장 등 구조물의 일부가 본 사업부지내로 축조된 상황일수 있습니다.
	분양홍보물 및 홍보관	■ 각종 홍보·인쇄물(카다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 홍보관 내 전시모형(건축물,조경,시설물,단위세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인허가권자 등의 각종 평가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카다로그 및 각종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변경) 도서에 준함. ■ 홍보관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홍보관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 제공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홍보관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여건 개선 또는 신제품의 개발 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건립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건축허가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홍보관 기준으로 건축허가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 ■ 각종 홍보물은 2023년 06월 건축 변경 허가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분양홍보물 및 홍보관에 표시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종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단위세대 모형 또는 카탈로그를 참고하시어 실제 입주하실 세대의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 지	**단지계획**	■ 단지 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시 분양단지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단지내 옹벽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구조상 보강시설물에 따른 점용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향후 소음측정결과에 의하여 사용검사(승인)전까지 방음벽이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시 위치,재질,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차량전조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소음 및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필로티 혹은 단지내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무전원 고정식 흡출기)이 설치되며,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와 근접해 있어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 활동 공간 필요에 따른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확보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인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개공지는 24시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는 누구에게나 개방되는 공간으로서 입주자 임의로 울타리, 가림막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의 유지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일부 저층구간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부분에서 취약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발주처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등의 이미지 및 투시도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 시 월드메르디앙의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될 수 없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또는 조경계획 등에 따라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 될 수 있으며 , 그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동 출입구 및 외곽 주변의 DA, 실외기실, 배기탑, 제연휀룸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위치가 결정된 바, 이용 상의 불편 및 인접세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를 확인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한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홍보관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지상1층에 배치되며, 이로 인한 시선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홍보관에 방문하시어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을 사용해야 하며,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름) ■ 단지 지상1층에는 제연용 송풍기가 설치되어 소방시설 점검시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주변 및 공용 시시설물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을 위한 설치 시설물의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난간 턱 높이조정, 창호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부위에 레벨 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울타리)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는 홍보관 사양에 따라 시스템 장비 구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외 보안 등 CCTV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 지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한전 인입 전주, 통신 인입 전주가 단지 내에 설치되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침해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 될 수도 있습니다. ■ TV 공청 안테나 및 위성 수신 안테나는 전파 수신이 양호한 동 지붕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고,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고,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외벽 일부분에 우오수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개별 상가 간판 등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조건, 건축심의조건, 전문심의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조경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냉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 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주차장 환기구)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냄새,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출입차단기는 경찰서, 안전총괄과와의 협의에 따라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층 외곽 주변에는 우수 및 오배수 맨홀과 집수정이 설치되며, 우수 및 오배수 처리 계획 변경과 원활한 배수를 처리를 위해 맨홀 및 집수정은 위치변경, 추가 및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조경시설, 포장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인허가 내용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출입구,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 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옥상녹화, 옥외시설물, 자전거보관소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선형 변경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카다로그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수량 및 사양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혼용되어 설계된 단지로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에서 진출입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의 형태 및 각 동 옥상, 지하주차장 등에 표현되는 줄눈과 지붕의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공개공지와 필로티, D/A,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상가 주차장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차로는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진출입부(보행자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방차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시, 별도의 출입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장식물은 추후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외부 월드메르디앙 브랜드 로고(BI)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V 및 기계식 주차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공동주택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 및 드라이비트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하주차장 바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않을수 있습니다. ■ 일부 공동주택 지붕의 구조물은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 사업자 중계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통행 유효통과높이 : 2.3m, 차량주차부 유효높이: 2.1m)- PD, AV, EPS, TPS, S.T, AD, PIT 등의 내부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의 대지경계는 사업부지 전체의 고저차로 인하여 사업부지 외부와 단차가 발생합니다.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 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 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건축물 등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공동주택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 외부의 도로 및 옹벽 등의 구조물은 실시계획단계로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홍보관,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등)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 주변의 인접건축물(기존 및 신축 건축물 등)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 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 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단지환경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 발전기 운전에 따른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건물 외벽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공개공지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센터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분양 시 또는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동시설 공간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및 보일러 설치로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 열기가 전달되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실외기는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휀룸 등 인접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 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인허가권자와의 협의 등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주차대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동별현황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MMI등급 Ⅶ-0.224입니다. ■ 본 주택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은 국가 공인 표준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재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추후 실제 세대의 성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과 입면의 장식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입면 계획상 설치된 장식물 등으로 인해 일부 세대는 음영 발생 등 일조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층 필로티 및 그 외 공간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되며, 시공 시 일부 규모, 형태,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 중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등) ,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 모양 및 색, 색채디자인] 마감재 및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호라인 하부 지하1층에 발전기용 급배기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 기타 급배기용 DA 등 외부시설은 단지배치도를 참조 바랍니다. 사업승인 및 분양 후 DA 등의 기타 외부시설의 위치, 크기,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시설 주변에 설치되어 이로 인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지하1층 동출입구(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에서 지하1층 주차장으로의 출입이 기능실(전기실, 통신실) 및 창고의 배치로 인해 제한 됩니다.
	지하주차장	■ 단지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충전을 위한 주차면도 전체 주차면 계획대수에 포함이 되고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자동차 외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층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점용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 채광용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본 시공 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경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대수는 126대 이며, 오피스텔은 15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17대입니다. (자주식 주차 18대, 기계식 주차 140대 총 158대 - 장애인주차장포함) ■ 전기자동차 충전은 지하2층에 급속 충전 1대, 완속 충전1대 설치 예정입니다. ■ 주차공간 외 별도의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세대별 지정주차공간에 대한 별도의 지정 및 표시는 없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휀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행하고 예방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됩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 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부대복리시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의 내부시설물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등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은 석재 등 기타 재료로 마감되고 아파트는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외장재 등이 설치 될 경우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 인접세대는 빛반사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공통사항**	■ PD, EPS, TPS실 등 내측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여야 합니다. ■ 각종 분양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홍보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도면 및 홍보관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됩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 세대 내부 칸막이벽의 재질이 경량벽체로 구성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경량벽면 거치(부착)시 거치(부착)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등의 중량물은 별도 보강을 하여야 합니다. ■ 욕실 벽 및 바닥, 현관바닥, 주방 벽, 발코니 바닥 등의 타일나누기는 홍보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창호, 가구, 석재, 타일, 도배,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치수 등은 실시공시 홍보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 외부 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 색상과 외장재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 조도 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액세서리 및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홍보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상층부와 연결되는 내부 계단의 개수와 치수 및 폭은 본 시공시 상이할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위치는 현장요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 성토 및 절토 구간이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어 동별 입면 부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관은 사업승인 도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 및 공용부 타일 마감은 타일 물성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휨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수전의 위치, 개소 및 다용도실 단차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됩니다.(욕조하부, 샤워부스 내에는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경, 비틀림 등이 발생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 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현관바닥, 주방 상판, 거실아트월 등에 사용된 타일 및 인조대리석 등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홍보관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패턴·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01~102동 세대 내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완강기가 설치(발코니1 및 테라스)되는 세대(4층)은 비상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시 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홍보관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기관 승인된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밥굽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성능시험을 통하여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품질 또는 성능을 확인 후 현장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의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성능저하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 홍보관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 홍보관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홍보관에 설치된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수분양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전기인덕션,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홍보관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공품목	■ 거실 및 방은 천정형 에어컨이 기본품목으로 제공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습니다.
	가구공사	■ 세대내부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및 거울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천장,벽체,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주방가구 및 붙박이장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각종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화장실) 출입문은 본 공사 시 PVC계통(ABS)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화장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주방상판은 제품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상·하부장의 깊이는 본 공사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 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시스템 선반은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배면은 타일마감이 없습니다. ■ 타입별 제공되는 주방가구, 냉장고장, 붙박이장, 드레스룸 선반 등은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바닥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창호공사	■ 외부 창호는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및 재질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실 연도배관으로 보일러실 창호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석재마감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 및 발코니난간대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오피스텔 창호는 배연창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사용자에 따라 불편함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2층 이상 세대 중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와 제18조의2에 해당되는 세대의 외부창호에는 창문의 한가운데에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는 빛반사등의 지름20cm이상의 역삼각형 붉은색 표시(스티커 등)가 부착되며, 해당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는 지름3cm이상의 타격지점이 원형으로 표시되며, 미관상의 이유로 제거가 불가합니다. ■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에 따라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면 지상에 차량 주정차 및 물품 적재가 불가합니다. ■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홍보관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별 창호는 본 시공시 창호의 사양 및 프레임 사이즈, 색상,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장식물 부착, 정원 및 테라스에 면한 방수턱 확대 시공 등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붙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은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판단기준 (2018 개정)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 예정이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홍보관과 위치 및 색온도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점검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화장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화장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화장실) 출입 시 문짝에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홍보관 소화 시설물 이며, 본 시공시 단위세대에는 설계도면 상 변경 시공 될수 있습니다. ■ 욕실(화장실), 드레스룸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거실용 또는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 제어됩니다. ■ 세대 내 우수입상관, 배수입상관, 선홈통, 드레인 등이 실제 시공 시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의 렌지는 전기인덕션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도시가스에 의한 가스렌지 아님)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되며,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도시가스·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침실2, 침실3 또는 현관에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되며,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 내에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따른 일부 공간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상부에 전열교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천장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 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은 채광창 창호의 유무 및 창호크기,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및 실외기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세대 내부에 기본적으로 하향식 피난구가 공통 설치되나, 최하층 세대는 설치 제외됩니다. ■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또는 세탁실 상부 천정에 설치되며, 전열교환기 및 연결 덕트가 천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피난사다리가 있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환기유니트에 의해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 구성상 전동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벽체두께는 동일 타입에서 층수 및 세대 위치에 따라 벽체두께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크기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되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하향식 피난사다리 및 출입문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 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피난공간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선택품목	■유무상옵션 선택결과에 따라, 홍보관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관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옵션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간 대지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등)이 단지 내・외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세대/점포에서 조망될 수 있습니다.

기 타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분양상담 관련	• 분양상담 및 계약 과정에서 분양 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시공사의 지침과 위배된 사항으로 시공사와 무관함. 1. 프리미엄 보장, 추가 할인, 계약해제, 연체료 감면 및 이와 유사한 보장행위 2. 계약 후 환매를 보장하는 행위 3. 분양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거래행위 4.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개별 약정행위

14 기타사항

■ 입주 예정일 : 2025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귀책 사유에 가하지 않은 입주 지연의 경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학교 배정 관련 유의사항

•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배치기준에 따라 초등학생은 동일중앙초등학교로 배치 가능하고, 중학교는 인근 부산중, 경남여중, 부산서중, 선화여중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부산광역시 교육청 배치기준에 따라 고등학생은 학교군부산고등학교에 분산 배치 가능합니다.
• 학생배치는 향후 사업추진 현황, 세대수 변경 등 제반여건 변화와 주변 개발사업, 교육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학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 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유효높이	출입구높이
주차장	지하1층	2.3m	2.3m
	지하2층	2.3m	2.3m

■ 내진성능 및 능력

최대지반가속도	내진능력(MMI 등급)
0.20	Ⅶ-0.224

■ 기타 사항

- '월드건설산업'은 월드메르디앙 브랜드 제공과 함께 인테리어 및 디자인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며, 본 사업의 시공사는 책임준공의 의무와 함께 공급 주택 및 복리시설의 하자보수와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 '월드건설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신탁회사, 대출금융기관 및 수분양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신탁사업의 특수성 및 신탁사의 책임과 의무의 범위

- 계약자(수분양자)는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은 위탁자인 ㈜베스안하우스가 매도인 겸 수탁자인 ㈜코람코자산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베스안하우스이고, 매도인 겸 수탁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은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코람코자산신탁이 매도인으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코람코자산신탁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신탁재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위탁자 ㈜베스안하우스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기된 분양대금, 발코니확장공사비, 유상옵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손해배상 및 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위탁자 ㈜베스안하우스와 시공사 마조아종합건설㈜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코람코자산신탁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은 위탁자 ㈜베스안하우스와 매도인 겸 수탁자 ㈜코람코자산신탁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코람코자산신탁이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공급계약 대상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 ㈜코람코자산신탁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베스안하우스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
- 매수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발급받은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 축 물 명	초량역 월드메르디앙(비주거)
건 축 주	㈜베스안하우스
준 공 일	2025.05.31.(예정)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49-1 일원
층 수	지하2층, 지상27층
연 면 적	3,926.85㎡
건축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설 계 자	㈜지을엔드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4-1174-6
인증기관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유효기간	2024.12.24.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인증 등급

인증등급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2016-7) [별표3]신축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건축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9호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8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4년 12월 24일

(사)한 국 그 린 빌 딩 협 의 회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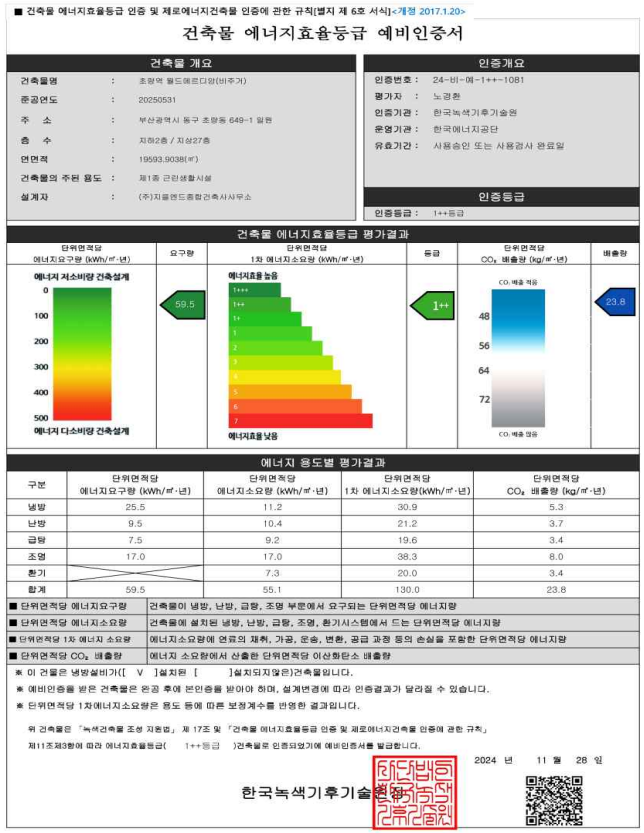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초량역 월드메르디앙(비주거)
준공연도	20250531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49-1 일원
층 수	지하2층 / 지상27층
연면적	19593.9038(㎡)
건축물의 주된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설계자	(주)지을엔드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개요

인증번호	24-비-에-1+++-1081
평가자	노경환
인증기관	한국녹색기후기술원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인증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25.5	11.2	30.9	5.3
난방	9.5	10.4	21.2	3.7
급탕	7.5	9.2	19.6	3.4
조명	17.0	17.0	38.3	8.0
환기		7.3	20.0	3.4
합계	59.5	55.1	130.0	23.8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V]설치된 [ ]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 년 11 월 28 일

한국녹색기후기술원장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건 축	전 기	소방 및 정보통신
회사명	지을엔드종합건축사사무소	㈜골드이엔지	㈜골드이엔지
감리금액	₩847,000,000	₩11,000,000	₩33,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상 호	㈜코람코자산신탁	㈜베스안하우스	마조아종합건설㈜
주 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	부산 동구 홍곡로 64번길 3, 7층	부산 동구 홍곡로 64번길 3, 7층
법인등록번호	110111-2359837	180111-0960286	18011-1004819

■ **분양홈페이지 :** www.북항월드메르디앙.com

■ **홍보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48-2

■ **분양문의 :** 051-468-2502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및 홍보관에서 확인바랍니다.